성주군 작은영화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년 월 일 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제안이유

군민의 다양한 문화향유기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립 중인 성주군 작은영화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4조에 의거 민간위탁에 관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 대상시설 현황

1) 위 치 : 성주군 성주읍 경산길 15-4(창의문화교류센터 3층)

2) 규 모 : 지상 3층, 95석(1관 48석, 2관 47석)

(단위: ㎡)

연면적	상영관		사무실	매표소 및 매점	화장실 외	비고
	1관 (48석)	2관 (47석)				
552.55	126	124.5	15.05	216.79	70.21	개관 2022.7.
주요 장비	영사시스템, 스크린, 음향시스템, 관람석 등			발권기, 냉장고, 팝콘기, POS기, 프린터기 등	휴게용 의자, 탁자, 휴지통, 유아 기저귀 교환대 등	

나. 주요업무 내용

1) 작은영화관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제반 업무

2) 그 밖에 “위탁자”가 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다. 위탁내용

1) 위탁기간 : 협약체결일로부터 3년(1회 연장 가능, 최대 6년)

2) 위탁방법 : 공개경쟁모집을 통한 수탁자 선정

3) 위탁사무 : 영화관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관한 제반 업무 등

4) 주요요건

가) 영화관 운영계획 및 관람료에 대한 사항은 군의 승인 득해야 함

나) 위탁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경비로 충당 원칙

다) 영화관 운영을 위한 적절한 인력 배치(성주군민 우선 채용)

라) 영화 상영작은 전국 동시 개봉영화

마) 영화관 시설 및 장비의 유지·보수, 훼손 및 멸실 재산의 원상복구

바) 영화관 운영에 따른 수입·지출의 정기 보고

3. 수탁자 선정

가.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나. 신청자격 : 위탁운영 모집공고일 현재 “영화배급업 및 영화상영업 신고증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

다. 선정방법 : 선정위원회(6 ~ 9명)를 구성하여 정량·정성평가

라. 선정기준

1) 정량기준 : 전문 인력보유 및 경력, 영화관 운영실적, 자기자본 등

2) 정성기준 : 영화관 운영·관리 계획 제안서 평가 등

3) 지역사회와의 연대 가능성

마. 근거규정 :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제5조 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및 제6조(수탁기관 선정)

4. 향후 추진계획

가. 위탁운영 수탁자 선정계획 수립 : 2022. 3. 24. 나. 위탁운영 모집 공고 : 2022. 4. ~ 5.

다. 수탁자 선정 및 협약 체결 : 2022. 5.

라. 작은영화관 준공 및 개관 : 2022. 7.

5. 참고자료

가. 성주군 작은영화관 신축 관련 사진 : 붙임 1

나. 관련법령 : 붙임 2

1) 「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7조(운영 및 지원)
2)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
3)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4)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5) 「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22조(행정재산의 위탁관리)
6) 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, 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, 제6조(수탁기관 선정), 제7조(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)

【붙임 1】

성주군 작은영화관 신축 관련 사진

□ 조감도(창의문화교류센터 내 작은영화관, 붉은 원 안)



□ 건축현장(창의문화교류센터 내 작은영화관)



【붙임 2】

【관 련 법 규】

「성주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

제7조(운영 및 지원) 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 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·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1. 위탁 대상의 표시, 범위와 위탁내용
2. 위탁기간
3.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4. 그 밖의 영화관의 수리, 보수 등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화관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.

「지방자치법」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07. 4. 6., 2007. 5. 17., 2009. 12. 29., 2011. 7. 14., 2017. 4. 18., 2018. 12. 24.>

5. 교육·체육·문화·예술의 진흥
 가. 어린이집·유치원·초등학교·중학교·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·운영·지도
 나. 도서관·운동장·광장·체육관·박물관·공연장·미술관·음악당 등 공공교육·체육·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
 다. 지방문화재의 지정·등록·보존 및 관리
 라. 지방문화·예술의 진흥
 마. 지방문화·예술단체의 육성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

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. 20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 <신설 2015. 1. 20.>

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<신설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 <신설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>

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10. 2. 4., 2015. 1. 20., 2021. 4. 20.>

1.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
2.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
3.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
4.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
5.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

「성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

제22조(행정재산의 위탁관리)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때에는 영 제19조,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·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1. 10., 2015.11.12>

1. 재산의 표시, 사용·수익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
2. 관리위탁을 받은 자(이하“관리수탁자”라 한다)의 성명 및 주소
3. 관리위탁 기간
4. 위탁료·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
5.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,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

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·징수하여야 한다.<개정 2013. 1. 10., 2015.11.12>

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·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,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.<개정 2013. 1. 10.>

④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<개정 2015.11.12, 2016.11.10>

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에 의한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.<개정 2013. 1. 10., 2015.11.12, 2016.11.10>

⑥ 제1항 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성주군에서 직접 시행한다. <개정 2015.11.12>

「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군수는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.

③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성주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
④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수탁기관의 선정기준)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인력과 기구, 재정부담능력, 시설과 장비, 기술보유 정도, 책임능력과 공신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.

제6조(수탁기관 선정)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위탁사무의 특성상 공개 모집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비공개 모집할 수 있다.

②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.

제7조(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)

①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성주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~9명의 위원으로 하되,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, 부위원장은 업무관련 실과소장으로 하며,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,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.

③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확인과 신청서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
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⑤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“성주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”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